#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97

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이연희·박지원·김정호

허 영 · 민형배 · 황 희

송재봉 • 이광희 • 이정문

한민수 · 박홍배 · 정성호

한준호 · 김남희 · 서미화

허종식 • 최민희 • 정준호

의원(18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·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.

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일률적으로 사용·수용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.

이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2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7조의2(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) ① 역세권개발사업은 사업시 행자가 역세권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.
  - ②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대하여는 「도시개발법」 제28조에서 제32조까지, 제32조의2, 제32조의3, 제33조에서 제36조까지, 제36조의2, 제37조에서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도시개발사업"은 "역세권개발사업"으로 본다.

제31조제1항제4호 중 "제17조"를 "제17조, 제17조의2"로, "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을"을 "수용재결, 사용재결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를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2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17조의2(역세권개발사업의 시
	행 방식) ① 역세권개발사업은
	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구역
	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
	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
	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
	<u>할 수 있다.</u>
	②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
	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
	<u>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</u>
	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.
	③ 제2항에 따른 환지계획의
	작성 및 인가 등에 대하여는
	「도시개발법」 제28조에서 제
	32조까지, 제32조의2, 제32조의
	3, 제33조에서 제36조까지, 제3
	6조의2, 제37조에서 제49조까지
	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도시개
	발사업"은 "역세권개발사업"으
	<u>로 본다.</u>
제31조(행정처분) ① 지정권자는	제31조(행정처분) ①
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

- 이 법에 따른 허가·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 지·변경,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·변경 또는 이전,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 치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·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 야 한다.
- 1. ~ 3. (생략)
- 4. <u>제17조</u>를 위반하여 토지 등의 <u>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을</u>받은 경우
- 5. ~ 10. (생 략)
- ②·③ (생 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제17조, 제17조의2</u>
<u>수용재결, 사</u>
용재결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
르 <u>=</u>
5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